

담당자	책임자

# 퇴직급여 지급신청서(확정기여형:DC/기업형IRP)



퇴직연금계약서 및 부속협정서에 따라 아래 가입자(수익자)에 대한 급여를 신청합니다.

## 기업 정보

기업명 (필수)	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	퇴직연금 계좌번호 (필수)	575 - 10 - 112962 - 9
----------	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

## 퇴직급여 지급신청 정보 [3101]

### 1) 퇴직자 기본정보

본인은 사용자(기업)와 합의에 의하여 법정지급기한(14일)을 초과하여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퇴직자명 (필수)	(인)	주민등록번호 (필수)	
임원여부 (필수)	<input type="checkbox"/> 직원 <input type="checkbox"/> 임원	퇴직자연락처	
입사일 (필수)	퇴사일 (필수)	최종중간정산일	
지급방법 (필수)	<input type="checkbox"/> 개인형IRP <input type="checkbox"/> 미지급(기업반환) <input type="checkbox"/> 일시금 ( <input type="checkbox"/> 만55세 <input type="checkbox"/> 300만원이하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)		
지급사유 (필수)	<input type="checkbox"/> 퇴직 <input type="checkbox"/> 사망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		
현물이전 (필수)	<input type="checkbox"/> 미신청 <input type="checkbox"/> 신청(아래사항 확인 후 서명 필수)		퇴직자명 : (필수) (서명/인)

※ 현물이전: 운용중인 자산을 그대로 이전하는 방식(신청일 포함 2영업일). 당행 개인형IRP로 퇴직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지급 접수 취소 불가  
· 퇴직소득세는 퇴직급여 지급완료 전일자의 평가금액으로 확정되며 지급 후 개인형IRP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세(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)로 과세됩니다.  
· 현물이전받는 금액은 현물이전 하는 상품의 평가액이며, 이전 후 상품을 해지(계약해지 등)하는 경우 약정이율이 적용되지 않아 이전받은 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.  
· 현물이전 신청시 2페이지 [현물이전 유의사항] 참고 바랍니다.

### 2) 퇴직급여 및 지급신청 정보

지급방법 (필수)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		
	잔여부담금 입금금액	입금예정일	

※ 1. 회사부담금 미납으로 인한 잔여부담금이 있는 경우 반드시 잔여부담금을 입금하여야 합니다. 2. 잔여부담금의 입금 완료 후 퇴직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.

차감항목 (선택사항)	과오납금액	임원퇴직소득 한도초과금액
	기타( )	

중간정산특례(선택사항)	<input type="checkbox"/> 합산과세 신청	지급요청일(선택사항)
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

### 3) 가입자부담금 소득·세액공제 미 신청(가입자부담금이 있는 경우)

미 신청(선택사항)	<input type="checkbox"/> 전부 미 신청	<input type="checkbox"/> 일부 미 신청
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### 4) 입금계좌 정보

입금계좌정보 (필수)	개인형IRP	입금은행	계좌번호
	일시금	입금은행	계좌번호

### 5) 동일년도 퇴직소득 정보

동일년도 퇴직소득 (선택사항)	퇴직급여		원천징수세액	
			퇴직소득세	지방소득세
	퇴직금제도퇴직급여			
	타퇴직연금퇴직급여			

본 신청서에 기재된 청구내용 및 상기인의 퇴직증명이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, 퇴직연금계약에 의거 회사부담금과 지연이자(발생시) 전액 납입을 확인합니다.

20    년    월    일

## 첨부서류

- 동일년도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『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』
- 타 금융기관으로 입금 요청 시, 『입금계좌사본』
- 가입자부담금소득·세액공제 미신청 시, 『연금보험료 등 소득·세액공제 확인서』

기업명	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	(신고인감/서명)
-----	-------------	-----------



## 현물이전 유의사항

- 현물이전이란 당행 DC/기업형IRP 가입자가 퇴직하여 당행 개인형IRP로 이전 시, DC/기업형IRP에서 운용중인 자산을 중도해지 없이 그대로 이전해 주는 서비스입니다.
- **당행 개인형IRP로 퇴직지급하는 경우만 신청가능**합니다.
- 전 상품(현금성자산, 정기예금, 수익증권, ETF, 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) 현물이전 가능합니다. 단, ETF 미수금 및 미지급금 등이 존재할 경우 현물이전으로 지급 접수가 불가능합니다. ETF 매매거래일 2영업일 이후 현물이전으로 지급 접수하시기 바랍니다.
- 현물이전 지급방식은 접수완료시 **취소가 불가능** 합니다.
- 가입자부담금이 있는 DC/기업형IRP 가입자의 경우 가입자부담금에 대한 수수료 수취 후 진행가능합니다.
- 퇴직소득세는 퇴직급여 지급완료 전일자의 평가금액으로 확정되며, 개인형IRP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세(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)로 과세됩니다.
- **정기예금 현물이전 후 만기도래 전 해지할 경우 일반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어 고객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**

[예시]

구 분	적 용 이 율
DC/기업형IRP에서 <b>현물이전 없이 퇴직</b> 으로 인한 정기예금 중도해지	<b>특별중도해지이율</b> 적용
DC/기업형IRP에서 <b>현물이전 처리 후</b> 정기예금 만기도래전 개인형IRP 해지	<b>일반중도해지이율</b> 적용

즉, DC/기업형IRP 가입자 퇴직으로 개인형IRP이전 후 바로 계좌해지를 원하는 고객의 경우 현물이전 지급방식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.

- 현물이전 신청시 현금성자산이 포함된 경우, 해당 현금성자산은 계속성 운용지시 및 사전지정운용제도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보유상품변경 거래를 하셔야합니다.
- DC/기업형IRP 정상 퇴직접수 완료 시, 개인형IRP 입금 완료까지 신청일 포함 2영업일이 소요됩니다.